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1. 16 선고 2019가단617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

변론 종결 2019. 12. 19.

판결 선고 2020. 1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/5 지분에 관하여, 선정자 C에게 같은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,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. 11. 28. 접수 제7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지선

별지